KOSHA GUIDE

C - 27 - 2011

## 7. 설치기준

## 7.1 공통기준

- (1) 방호선반은 풍압, 진동,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방호선반의 바닥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(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)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난간은 방호선반에 낙하한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방호선반의 최외측 이 구조물 쪽보다 20° 이상 30° 이내로 높아야 한다.
- (6)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 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, 8m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다.

## 7.2 외부비계용 방호선반

- (1)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 설비중 근로자, 보행자, 차량 등이 통행할 때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방호선반의 설치 위치는 구조체와 비계기둥의 틈사이 및 비계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선반의 상·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 거리 매 3.6m 이하마다 보강하여야 한다.

## 7.3 출입구 방호선반